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년월일	2014. 12.

의 결 사 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년월일	2014. 11. 20.
제 안 자	안장환 의원 외 18명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장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4. 11 20.

발의자 : 안장환, 운영철, 김재상, 김정곤,
손홍섭, 허 복, 정하영, 정근수,
김상조, 박세진, 안주찬, 한성희,
양진오, 강승수, 박교상, 김인배,
윤종호, 김태근, 임춘규19 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2014.10.31.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15년
~ 2018년도 구미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을
조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
“1,970,000원”을 “2,016,000원”으로 조정(안 제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월정수당 매월 “1,970,000원”을 “2,016,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월정수당지급) ①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은 매월 <u>1,970,000원</u> 을 지급한다. ② (생략)	제3조(월정수당지급) ①----- ----- ----- <u>2,016,000원</u> -----. ②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③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 정) 1995.01.01 조례 제 3 호
(개 정) 1995.08.14 조례 제182호
(개 정) 1996.02.21 조례 제223호
(개 정) 1997.03.12 조례 제267호
(전문개정) 2000.03.20 조례 제405호
(개 정) 2002.07.18 조례 제493호
(개 정) 2003.12.31 조례 제537호
(일부개정) 2005.09.06 조례 제600호
(일부개정) 2006.05.12 조례 제640호
(일부개정) 2007.02.28 조례 제675호
(일부개정) 2007.12.31 조례 제708호
(일부개정) 2009.01.01 조례 제764호
(일부개정) 2013.01.09 조례 제94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12)

제2조(의정활동비지급) ①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의정활동비는 매월 구미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지급) 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매월 1,97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6.05.12, 2007.12.31, 2009.1.1, 2013.1.9)

②월정수당 지급시기는 제2조제2항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개정 2006.05.12)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한다.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0,000원과 보조활동비 200,000원으로 한다

제7조(삭제 2006.05.12)

제8조(여비지급기준) ①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구미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타조례의 개정) 「구미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493호, 2002.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537호, 2003.12.31>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600호, 2005.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640호, 2006.5.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675호, 2007.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708호,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8. 1. 1부터 적용 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764호, 200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944호, 201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